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0호로 202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인 민간위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5명에서 7명
으로 개정 (안 제2조제1항)
-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5명 위원 중에서 선임(안 제2조제2항제1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1. 3. 11. ~ 3.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제1호에서 위촉 대상인 5명의 위원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021.6.23.)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법의 시행에 맞춰 2021년 6월 23일로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우리 구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공직자윤리법(2020.12.22. 일부개정, 2021.6.23. 시행)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